

■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[별표 1] <개정 2024. 12. 31.>

공산품·수산물 및 단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(제2조 관련), 국내외 가격 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(제2조·제6조 및 제7조 관련)

별표 1의 자세한 내용은 별표 제목 오른쪽 한글 아이콘()을 클릭한 후 아래 주소를 클릭하거나, 주소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십시오.

http://www.law.go.kr/BYL/grtFile/law0039312024123135126KC_000100E.zip